

재가서비스 분야의 돌봄노동과 외국인력 수요*

조혁진**

본 연구에서는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가 돌봄의 특징과 수요 유형 그리고 재가 돌봄 수요에 대한 공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의 가능성이 시작된 현재의 상황에서 내국인력의 공급 확대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에 외국인력 도입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종사자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화와 언어의 문제, 신원 보증 문제가 중요하며, 외국인력의 입장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직접 고용 및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된 주거 문제의 해결 및 노동시간의 확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초저출생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돌봄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과도한 돌봄 비용 부담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저출생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기초는 '내국인 노동시장과의 조화'이며, 특정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곧바로 외국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해당 분야 인력부족의 현황과 실태

* 이 글은 이규용 외(2022), 『돌봄서비스업 외국인 노동시장 연구』 중 제4장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yukjincho@kli.re.kr).

를 파악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 분야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룰 주요 질문은 ‘가정 내 돌봄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으며, 각각의 돌봄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가정 내 돌봄 수요에 대한 공급 현황은 어떠한가?’라는 점이다.

II. 한국의 재가돌봄서비스

1. 한국 사회 재가돌봄노동의 특징

오늘날 한국 사회 재가돌봄노동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돌봄 종사자가 가정 내 구성원에서 가정 외부의 인력으로 변화되었으며, 돌봄인력의 고용관계가 과거 ‘비공식’에서 현재 ‘공식’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의 가사노동과 아이·노인 돌봄은 모두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이 가구 내에서 무급으로 전담해 온 것이었다. 이러한 돌봄노동의 수행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러한 외부 인력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로 일해 왔다. 이른바 이들은 ‘비공식’의 영역에 존재하였으며, ‘비공식’에 기반한 돌봄 노동은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의 확대는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 산모,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영역에서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는 공적 서비스¹⁾가 시작되었다.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종사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 산모, 노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는 공식화의 경로를 거쳤다. 반면, 정부 재정 지원 재가돌봄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가사서비스 영역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제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세를 하지 않는 비공식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재가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과정이 공장의 생산 방식처럼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노동공간인 고객의 가정은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주거지라 하더라도 공간의 배치와 구성 등이 동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돌봄사업 등.

일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간에 따른 일률적인 노동과정의 표준화가 쉽지 않다. 서비스 노동의 대상이 고객이라는 인적 특성을 살펴볼 때, 고객의 연령과 성별, 요구 사항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도 표준화가 어렵다. 아이돌봄의 경우, 소비자인 부모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 아이의 연령과 상황 그리고 종사자의 다양한 상황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쉽지 않은 특성이 존재한다.

셋째, 소비자와 고객 사이의 신뢰는 서비스 제공 및 지속의 중요한 요소이다. 재가돌봄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부인을 사적인 공간인 가정 안으로 들이는 것이며,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 종사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사 및 육아 관련 재가돌봄서비스 제공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종사자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라고 한다. 업체에서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서비스 종사자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증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또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 교육도 진행하며, 배상보험책임 가입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종사자와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의 폭력, 성희롱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특성이 존재한다.

2. 재가 돌봄의 분류

첫째, 돌봄은 무엇을 돌보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돌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 돌봄은 가정 내 원활한 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윤자영(2020)에 따르면, 돌봄노동은 대면으로 대상자를 직접 돌보는 행동과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돌봄 대상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활동으로서의 “직접 돌봄노동”과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가사노동 등으로 구성되는 “간접 돌봄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법률적 정의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대표적이다.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제2조 1항)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청소와 세탁, 주방일 등은 “간접 돌봄”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환자 등의 보호 및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것은 “직접 돌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돌봄노동은 노동 수행 형태에 따라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주형의

경우, 돌봄노동자가 고객의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출퇴근 형은 돌봄노동자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재가돌봄 영역 중 입주형에서 출퇴근형으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가사서비스 영역이다. 이른바 과거에 ‘식모’로 불렸던 경우처럼, 가사노동자가 고객의 가정에 입주하여, 숙식을 해결하며 청소와 세탁, 조리 등의 거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른바 ‘입주형 종합 가사서비스’ 형태는 거의 사라지고, 최근에는 대부분 출퇴근 노동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조혁진, 2022). 출퇴근형이 주요 노동 수행 형태가 된 최근의 현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시간이 1일 8시간인 전일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고객은 1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사노동자는 1개의 고객 가정에서 4시간

〈표 1〉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과 평균 가구원 수(1970~2021년)

	가구 수 (천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						평균 가구원 수 (명)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1970	5,576	-	9.7	13.3	15.5	17.7	43.8	5.2
1975	6,648	4.2	8.3	12.3	16.1	18.3	40.7	5.0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2005	15,887	20.0	22.2	20.9	27.0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2015	19,111	27.2	26.1	21.5	18.8	4.9	1.5	2.5
2016	19,368	27.9	26.2	21.4	18.3	4.8	1.4	2.5
2017	19,674	28.6	26.7	21.2	17.7	4.5	1.3	2.5
2018	19,979	29.3	27.3	21.0	17.0	4.3	1.2	2.4
2019	20,343	30.2	27.8	20.7	16.2	3.9	1.0	2.4
2020	20,927	31.7	28.0	20.1	15.6	3.6	0.9	2.3
2021	21,448	33.4	28.3	19.4	14.7	3.3	0.8	2.3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2) 평균 가구원 수=일반가구원 수÷일반가구 수.

3) 전수부문은 2015년부터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되며, 2016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단위로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가사서비스 제공 형태가 '입주형 전일제'에서 '출퇴근형 시간제'로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가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가구 구조가 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대가족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입주형 가사서비스의 수요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과 평균 가구원 수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 가구였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5.2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전체 가구의 48.2%가 1~2인 가구에 해당하며, 2015년 이후부터는 1~2인 가구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2021년 기준 4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18.8%에 불과하며,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이다.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따라 입주형태 돌봄노동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하였고, 고객의 가정에 매일 출근하여 처리해야 할 만큼의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과거 입주형 가사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가 1 대 1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한 명의 가사노동자가 여러 고객 가정을 방문해서 시간제로 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대상의 직접 돌봄의 경우는 일부 입주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유모'라는 존재가 고객의 가정에 입주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전담하였다면, 오늘날 전통적인 '유모'는 거의 사라지고, 아이의 출산 직후 이른바 '산후관리사'의 형태로 고객의 가정에 입주하여 산모 및 아이를 대상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유형이 존재한다. 입주형 산모 및 신생아 돌봄의 경우 부모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하는 시기와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기에 이르면, 돌봄 수요는 입주형에서 출퇴근형으로 변화하게 된다. 주 돌봄 대상인 아이가 가정 외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돌봄의 고객인 부모 입장에서는 입주형 전일제 돌봄보다 출퇴근형 시간제 돌봄을 선호하게 된다.

〈표 2〉 재가돌봄서비스의 노동 수행 형태와 수요 현황

	입주형 전일제	출퇴근형 전일제	출퇴근형 시간제
청소-세탁 주방일 등의 가사	거의 없음	거의 없음	대부분의 수요
아이 돌봄	일부 있음	거의 없음	대부분의 수요

자료: 저자 작성.

Ⅲ.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의 수요와 공급

1. 아이돌봄의 수요와 공급

가. 아이돌봄 수요

베이비시터 업무는 시간제, 전일제, 입주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연령, 돌봄 대상 부모의 환경, 돌봄 대상 가구의 특성 등에 따라 일률적인 업무 표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아동이 신생아 및 영아일 경우 돌봄 종사자가 고객의 가정에서 함께 기거하며 ‘입주형’으로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풀타임 돌봄’이 있다. 입주형 베이비시터는 고객의 가정에 입주하여 아동을 돌보면서 아이돌봄을 전담하는 경우 및 아이돌봄과 일부 가사서비스를 함께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주형 베이비시터의 경우, 주 업무에 대해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고객 가정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알선업체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주형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아이가 만 0세에서 만 2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풀타임 입주형 돌봄에서 출퇴근 방식의 보조형으로 변화하는 시기 중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부터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되면, 입주형 베이비시터보다는 출퇴근형 베이비시터를 통해 아이의 등원과 하원 그리고 하원 이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

아이돌봄의 노동 과정은 크게 돌봐주기(care)와 놀아주기(play)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베이비시터는 0~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봐주기를 주 업무로 하며, 돌봐주기 업무는 분유 급여, 이유식 만들기 및 먹이기, 기저귀 교환, 잠재우기, 목욕시키기 등으로 구성되고, 돌봄 대상 아이와 관련된 젓병 세척 및 소독, 침구 정리 등 간단한 가사 업무를 맡는다. 돌봄 대상 아동이 4~7세인 경우 베이비시터의 주 업무는 돌봐주기와 놀아주기로 구성된다. 4~7세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돌봄 대상 아동과 놀아주기, 밥 또는 간식 먹이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원 등원과 하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봄 대상 아동이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 생활관리 및 간단한 숙제 지도 등으로 베이비시터 업무가 구성된다.

부모가 각종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를 사용하기 수월한 임금노동자로서 맞벌이 가정을 전제해 보자. 이 경우, 일반적인 아이돌봄 형태는 출산 시기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와 어린이집에 가고 난 이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의 돌봄은 가정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 의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서부터 돌봄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주목할 점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기는 부모의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대략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된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고용형태, 이른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인 경우,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생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부모 이외의 다른 누군가가 돌봄을 맡아 줄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나. 아이돌봄 공급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 아이돌봄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 대상의 입주형 베이비시터의 경우 출퇴근형보다 사람을 더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베이비시터 인력 알선업체 A에 따르면, 입주 베이비시터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매칭이 쉽지 않음을 홈페이지상에 고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매칭 업체 C에서는 아이돌봄시장에서의 '구인난'에 대해 입주형의 경우, "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노동형태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출퇴근형 종사자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종사자 입장에서의 요인을 거론한다. 첫째는 아이돌봄종사자의 거주지와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 가정의 거리 문제이다. 통상 아이돌봄은 돌봄서비스 수요자와 돌봄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이동 거리가 길면 서비스가 성사되기 어렵다. 대부분 1일 3~4시간가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먼 거리로 이동하는 것은 투입 시간 대비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아이돌봄 일감을 찾으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력이 없다면 서비스 매칭은 어렵다. 둘째는 돌봄 대상 아이의 특성이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돌봐야 하는 아이의 연령이나 성별, 인원수 등의 특성에 민감하다. 특히,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이른바 기저귀를 찬 아동인 영아 돌봄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꺼려하고, 남아 다자녀 가정인 경우 역시 매칭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셋째는 돌봄 대상 가정의 부모 특성이다. 특히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 및 부모의 직업에 따라 스케줄 변동이 잦은 경우, 그리고 주말 및 야간에 주로 일하는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할 경우, 이른 아침, 주말, 야간 등은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근로시간이 아니며, 잦은

스케줄 변경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매칭이 쉽지 않다. 넷째는 종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등원부터 시작하여 하원 그리고 부모의 퇴근시간까지가 총 근무시간이 되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청소,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아이돌봄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사 영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요청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주로 출퇴근형 베이비시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주형 아이돌봄 형태는 꺼려하기 때문에 입주형 아이돌봄 종사자는 주로 중국동포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가사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가. 가사서비스 수요

순수 가사서비스 영역의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가사서비스는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 바쁜 일상에 가사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 가사에 버거운 어르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집안일을 가진 주부님들에게 가사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적극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맞벌이 부부로부터 어르신 등으로 다양하며, 서비스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업체에서는 서비스 제공 시간 4시간을 기본 1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기본 제공 서비스 영역은 청소와 세탁, 주방일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 가정의 면적에 따라 서비스 요금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가사서비스 이외에도 이사 청소, 리모델링 청소 등의 특별 서비스도 존재하는데, 4시간을 기본으로 고객 가정의 면적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이 달라진다. B사회적협동조합의 서비스 설명자료를 보면, 4시간을 기본 1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의 노동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가사관리사는 고객의 가정에 도착하여, 환기를 시작으로 세탁, 주방, 욕실, 방-거실-현관 청소를 진행하고, 정리정돈 및 쓰레기 배출 업무를 진행한다. 가사관리 서비스 안내에는 가사관리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고객과 가사관리사 사이에 업무 범위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주로 1주에 1~2회, 2주에 1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용자 입장에서 매일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구원의 수가 매우 중요한데 가구원 수가 많지 않은 현대사회의 특성상 가정 내에서 필요한 가사노동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구원 수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일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할 필요가 없고,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주 1~2회 또는 2주에 1회 이용이 가장 선호하는 이용 패턴

인 것이다.

나. 가사서비스 공급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종사자가 고객의 가정에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고객의 수요는 1주에 1회 또는 2회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영역에서도 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꽤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사서비스를 수행할 서비스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중개업체에 따르면, 서비스 주문 중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꽤 높다고 한다.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목한다.

가사서비스 인력 부족의 첫째 이유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이 일자리가 보통의 직업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 때문이다. 일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종사자들이 일감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한다. 종사자들이 일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동거리와 시간의 문제라는 점과 고객 가정의 특성에 따라 종사자의 선호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요는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IV.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의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무부(2018)의 설명자료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가능 여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또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²⁾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 2018). 아래에서는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의 외국인력 도입 문제와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의 법·제도 변화 쟁점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에 외국인 종사자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한국 사회에서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을 다루는 법·제도가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은 ‘비공식성’ 기반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오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였다. 그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이다. 이 법의 시행은 비공식이 일반화된 시장 상황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되었으며,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고 불려왔던 이 노동은 노동 관련 법 규정의 제외를 특징으로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가사노동 관련 입법화를 추진해 왔으며, 2021년 5월 21일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 6월 16일 법이 시행되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³⁾ 둘째,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에 이용요금을 지불한다.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고객이 제공기관에 요금을 지불하고, 제공기관은 이용요금을 바탕으로 가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셋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가사근로자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도 가능하다.⁵⁾ 넷째, 가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용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비스의 종류·서비스의 제공시간·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⁶⁾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다섯째,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가사서비스 제공기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제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이용계약의 사항

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보호된다(조혁진, 2022: 70~71).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을 통해, 한국사회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의 주요 특징인 비공식성, 고객과 종사자의 상호신뢰 확보의 문제 등에 대한 진전 및 가사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사근로자법」 이전 해당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부족했던 점이 해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주의 깊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사근로자법」을 통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재가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해당 분야에 취업자가 증가한다면,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도입 시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외국인력의 고용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역시 「가사근로자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외국인력이 ‘가구 내 고용’ 형태로 개별 고객과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 경우, 비공식 상황에서 내국인 돌봄 종사자들이 경험했던 노동권 배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외국인 돌봄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력 도입이 공식화된다면, 외국인력의 고용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연구진이 인터뷰를 진행한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이용자 모두 ‘업체’가 외국인력의 고용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저희는 업체에서 그래도 고용해야지... 개별 가구에서 개별 고용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고용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 업체 경영진)

“외국인 도입이 금방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제공기관만이 고용하는 걸로..., 직접 다이렉트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체가 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비자나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보다는 기관이 좀 더 걸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국인보다 조금 더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관에서 선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은 가사서비스 종류 · 제공일 · 제공시간, 이용요금과 지급방법,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안전에 관한 사항,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재가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시 노동 수행 형태에 따른 쟁점

재가돌봄 영역에서는 노동 수행 형태에 따라 입주형과 출퇴근형이 존재한다. 재가돌봄 영역에서는 신생아 돌봄 등의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핵가족화의 진전,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입주형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만약 외국인력이 도입된다면, 어떤 형태의 노동이 외국인력에게 적합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외국인력이 입주형 전일제로 일할 경우이다. 외국인력이 입주형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입주형 전일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할까? 앞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의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입주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이돌봄 영역의 경우 입주형 전일제에 대한 일부 수요가 존재한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상 입주형 전일제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이 인터뷰한 입주형 전일제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중국동포 종사자(F-4 비자 소지자)를 가구 내 고용 형태로 가사 및 아이돌봄을 포함한 이른바 ‘토털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 이용자에 따르면, 자신이 입주형 전일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자녀(3자녀)와 맞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용자가 말한 토털 서비스 형태 종사자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9시에 애들이… 쌍둥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나면… 이모님이 청소를 하시고요… 청소 마치시면 10시 반 정도부터 점심시간까지 휴식시간…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시 반에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는 또 아기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 또 2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때도 휴식… 그 이후에는 큰 애들이나 저희 가족들 식사 준비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쌍둥이 데리고 잠자는 그런 방식으로 하루 일과가…” (입주형 토털 서비스 이용자)

입주형 전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종사자가 아이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면시간 확보가 중요한데, 입주형 종사자가 아이를 데리고 함께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입주형 전일제 종사자 중 현재 중국동포 종사자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 첫째는 언어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 그리고 둘째는 내국인에 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이다. 현재 입주형 토털 서비스 이용자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지불하는데, 이 지역에서 내국인 입주형 토털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350만 원 이상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국인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입주형 전일제 종사자를 통해 토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주형 전일제 종사자가 가정 내

에서 함께 생활해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입주형 종사자를 위한 공간이 없을 경우, 입주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내 공간이 충분한지의 문제 역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입주형 재가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인력 종사자 입장에서 숙식이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에 특정한 주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무일의 거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돌봄노동 종사자의 거처가 한국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객의 가정에 출퇴근하여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유형을 고려해 보자. 앞서 살펴본 대로, 내국인 재가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이 출퇴근형으로 일하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와 고객의 가정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감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객의 서비스 수요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종사자의 인력 공급 역시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력이 출퇴근 형태로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외국인력의 주거지와 관련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일하고자 할 경우 출퇴근형 재가돌봄서비스는 종사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주거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시장 상황상, 신생아 돌봄의 입주형 전일제 방식을 제외하고 단시간 출퇴근형 아이돌봄 방식이 주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만약 외국인 돌봄노동 인력이 공식적으로 도입된다면, 안정적인 일감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이 확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출퇴근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형태는 등원과 하원 시기, 그리고 하원과 부모의 퇴근으로 이어지는 시기 등으로 구별해 볼 때, 등하원 3시간, 하원 후 부모 퇴근까지 2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이 확보된다고 할 때, 돌봄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동안 나머지 시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서비스 시장에서 아이돌봄과 가사돌봄의 업무내용 분화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만약 외국인 아이돌봄 종사자에게 아이돌봄 관련 업무 이외의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의 서비스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노동시간의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퇴근형 전일제 방식의 업무 수행은 가능할까?'라는 문제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수요 측면에서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이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가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아이돌봄 종사자가 고객의 가정으로 출근하고, 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하면 아이돌봄 종사자가 고객의 가정에서 퇴근하는 방식의 아이돌봄 노동 수행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른바 '배턴 터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이른바 '배턴 터치' 방식의 출퇴근 전일제 방식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배턴 터치' 방식이 필요한 시기는 부모의 육아휴직

복직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사이의 시기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일감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존재할 것이다. 보통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이후 입소가 결정되는 시기가 지역별로, 어린이집별로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3.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쟁점

재가돌봄서비스는 서비스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서비스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서비스이든 가정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범위’, ‘방식’ 등을 표준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고객의 성향과 요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는 고객과 계속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영역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은 재가돌봄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소비자 사이의 대면과 소통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인 고객과의 대면과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동포는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로 많이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재가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더라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달라서 서비스 만족도를 쉽게 얻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국동포... 그때 당시 한국인 도우미랑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입주서비스로... 그럼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드린 거였는데... 돈이 세이브되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이한테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입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같이 생활하고 데리고 자는 것까지 하니까... 음식 하나에서... 저도 그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같은 거 보고 되게 문화 차이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써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동포... 아주머니... 좋아요... 우리 말도 잘하시고 너무 좋은데... 문화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삶은 달걀을 하는데... 밥을 해놓고는 그 위에 달걀을 올려서 삶은 달걀을 하시는 거예요... 압력솥 위에 달걀을 놓고 같이 해서 삶은 달걀이라고 꺼내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내가 이 밥을 먹어야 해?... 이질감이 많았거든요...” (재중동포 입주 가사노동자 이용 경험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주방일이든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남’이 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외부인이 고객의 내밀한 공간인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최소 1일 4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

체류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나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가?”라는 점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가사근로자법」 제12조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이러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정해놓았다. 이러한 범죄경력 조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신원보증이 확실히 되어야 하지만, 외국인력이 공식적으로 도입된다면,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 역시 동시에 제기된다.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재가 돌봄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으며, 각각의 돌봄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재가 돌봄 수요에 대한 공급 현황은 어떠한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청소·세탁·주방일 등의 순수 가사서비스 영역과 아이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재가서비스 분야의 돌봄의 특징과 재가 돌봄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살펴보았으며, 현재의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의 상황과 수요 및 공급 현황에 기반하여, 돌봄 분야 외국인력의 도입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재가돌봄서비스 분야의 노동 수행 형태는 입주형 전일제, 출퇴근형 전일제, 출퇴근형 시간제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입주형 전일제의 수요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출퇴근형 시간제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외국인력 입장에서는 “입주형 전일제 방식”의 경우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입주형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입주형태의 외국인력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출퇴근형 전일제 방식’의 수요는 어린이집 입소 정원의 상황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만약 외국인력 도입이 공식화되어 출퇴근형 전일제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에서는 ‘출퇴근형 시간제 방식’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시장의 상황이지만, 출퇴근형 시간제 방식의 재가돌봄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외국인력의 노동시간 확보 및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존재한다.

또한, 재가돌봄서비스의 서비스 특성상 소비자와 종사자 사이의 언어 소통 및 상호 신뢰 형

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의 가정과 상황, 성향에 따라 표준화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과 종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언어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력의 선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재가돌봄서비스 외국인력의 신원 보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법무부(2018),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가능 여부 설명」.
- 윤자영(2020), 「무급 돌봄노동의 실태와 경제적 가치 추정」, 장지연 외,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한국노동연구원.
- 조혁진(2022), 「가사서비스 공식화: “보통의 직업”, “보통의 서비스”를 향한 첫걸음」, 『사회적 대화』 제1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